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 관한 공시

❑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▪ 개정사유

- 금융당국의 안건송부 절차 강화 요구에 따라 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의자료 송부 및 소집통지 일자를 확대(변경)함

▪ 주요 개정내용(신·구조문 비교표)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11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,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(생략)	**제11조 (이사회의 소집)**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,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(생략)	▪ 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의 3일전까지 회의자료 송부 및 소집통지
(신 설)	**부 칙** **이 규범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**	(신 설)